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Page : 1/17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주성엔지니어링(주)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Page : 2/17

목 차

제 1 장 총 칙		4
제 1 조 【목 적】		4
제 2 조 【적용범위】		4
제 3 조 【권 한】		4
제 2 장 구 성		4
제 4 조 【구 성】		4
제 5 조 【위원장】		5
제 3 장 운 영		5
제 6 조 【부의사항】		5
제 7 조 【결의방법】		9
제 8 조 【의사록】		10
제 9 조 【자료요청 등】		10
제 4 장 회 의		10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Page : 3/17

제 10 조 【간 사】10

제 11 조 【통지의무】11

제 12 조 【소집권차】11

제 13 조 【소집절차】11

제 5 장 기 타 11

 제 14 조 【규정의 개정 및 폐지】11

별 첨 1 이익배분의 목적 및 규정 12

별 첨 2 내부거래 및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시행세칙 14

 제 1 조 【목 적】14

 제 2 조 【적용범위】14

 제 3 조 【용어의 정의】14


 제 4 조 【내부거래에 대한 경영위원회의 직무와 권한】14

 제 5 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15

 제 6 조 【일반원칙의 예외】15

 제 7 조 【기타 거래의 제한 및 절차】16

 제 8 조 【제한의 예외】16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Page : 4/17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 내에 설치된 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권한】

- ① 위원회는 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 ② 위원회는 직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의 업무를 감독·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한 때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 6조의 각 부의사항,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기타 회사 주요 경영사항을 토의, 심의 및 의결하고 이사회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 2장 구 성

제 4 조 (구성)

- ① 경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의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Page : 5/17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2인 이상 4인 이내 이사로 구성하며, 반드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해임되지 않는 한 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

제 5 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사의 이사회 의장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의장)을 준용한다.

제 3장 운 영

제 6 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경영위원회 안건은 경영위원회 전담 부서장이 발의한다.

- ① 기술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1. 당해연도 연간 연구개발비 예산 수립
 2.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집행 실적 보고(연 1회)
 3. 연구개발의 사업타당성 검토 및 지속 여부 심의 및 의결
 4. 개발 완료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확보 조치
 5. 중단 및 실패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사후처리 및 대안 보고
(회계처리까지 포함한다.)
 6. 그 외 기술개발활동과 관련해 위원장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기타 행위
- ②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1. 계약에 관한 사항
 - 가. 최초 진행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Page :

- (1) 최초 구매계약서: 당사가 최초로 진행하는 구매 목적의 계약
- (2) 최초 수주계약서: 당사가 최초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목적의 계약
- (3) 신규 사업추진 위한 회사 설립에 관한 계약 등 최초로 진행하는 계약


나. 일반 계약

- (1) 비밀유지계약(NDA): 당사자간 교환될 정보의 보존과 취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명확하게 하기 위한 계약
- (2) 공동개발계약(JDA): 혁신을 위해 공동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
- (3) 공동개발프로젝트(JDP): 공정에서 장비에 맞춘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한 장비 공동 개발 프로젝트 계약
- (4) 공동평가프로젝트(JEP): 공정 개발한 것을 양산 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는 장비 공동 평가 프로젝트 계약
- (5) 에이전트 관련 계약
 (단, 고객으로부터 구매요청사(PO)가 확정 발급되어 수수료 지급 규모가 확정될 경우, 그 내용에 대해 다음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신규 고객 및 신제품 공급조건(컨셉 및 사양, 평가, 납기, 대금결제조건) 결정
- 3. 고객 요청 납기 준수 위한 선제적 대응 진행
- 4. 프로젝트 승인 예산 초과 건
- 5. 신규사업 진행 및 기존사업 중단
- 6.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해지
- 7. 그 외 영업활동과 관련해 위원장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중요한 계약 및 기타 행위

③ 재무에 관한 사항

- 1. 5억 이상 50억 미만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 처분 및 양도
(중요한 자산의 기준은 경영위원회의 판단)
- 2. 50억 미만의 타회사에 대한 출자 및 처분
- 3. 50억 미만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채무면제
- 4. 50억 미만의 시설투자(공장신설 및 증설)
- 5. 50억 미만의 신규 차입
- 6. 기존 차입금에 변동성을 주는 행위(한도증액, 기한연장, 상환 등)
- 7. 통화선도 계약 및 파생상품 약정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Page :

8. 선급금 지급보증 발행

9. 직원 대여금

가. 대상자는 소속된 조직의 임원 또는 조직장(본부장 및 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소속 조직장이 추천사유 발표 후 논의)

나. 1가구 1주택(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로 한다.

(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 이자 납부의 부담이 과중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직원 대여금의 대상자는 입사 후 3년 이상, 과거 3년 평균 고과가 전사 평균 이상인자로 한다.

라. 상환기간은 대여금 지급 후로부터 최대 10년으로 한다.

(상환기간 내 퇴사 시 대출약정을 해지하고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며, 본인 의사에 의한 중도 상환 가능)

마. 회사가 정한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인정이자율은 반영)

바. 최대 대여금액은 대여 당시 기본연봉에 상환기간을 곱한 금액의 50%로 한다.

(상환기간은 6조 3항의 9의 4 라에서 확정된 기간을 적용하며, 기본연봉은 기본급, 고정 OT, 당해연도 업무 책임수당 또는 영업 책임수당의 합계로 한다.)

사. 위의 자격 요건과 별도로 소속 임원 또는 조직장(본부장 및 실장)은 회사에 기여함이 있다고 판단한 임직원에 대해 직원 대여금 안건을 경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직원 대여금 지급 여부는 경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회사의 경영환경 및 재무상황 고려 등)


10. 그 외 재무관련 주요 현안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④ 기타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1. 당사가 피소되거나 제소하여 계류중인 소송 및 중재에 관한 사항

2. 영업활동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 외 위원장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계약

3. 당사 의사결정기구 운영규정 및 기타 사규, 사칙의 제정, 개정 사전 보고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Page :

4. ESG 경영에 대한 연간 단위 중점 추진 과제 설정, 구체적 실행계획 및 활동성과 보고 및 심의 (연 1회)

(1) 환경경영 및 환경성과

- 가. 당해연도 환경목표 수립 및 추진(시설 등에 대한 신규투자계획 포함)
- 나. 당해연도 용수 이용량, 폐기물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평가 보고
- 다.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고도화
- 라. 당해연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실적 평가 보고
- 마. 당해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위반 적발 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 보고


(2) 사회적책임경영

-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업장 내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내부규정 설립 및 개정
- 나. 당해연도 당사가 수립한 안전정책에 대한 근로자 위반사례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
- 다. 공정거래 및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한 내부 감시 체계 구축 및 개선
- 라. 당해연도 공정거래 및 하도급 관련 법률에 대한 당사 임직원의 위반사례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
- 마. 협력사와 체결하는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 (NDA 및 구매계약서)
- 바. 연간 책정된 자원 내에서 1억원 이상의 회사의 사업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기부 및 투자 등에 관한 집행

(3) 기업지배구조개선

- 가. 주주권리보호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배당지급판단기준 및 배당형태 포함) 수립 및 개정
- 나. 주주가치 및 주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5. ESG와 관련된 법규정 재개정에 따른 위반 리스크 및 규제준수 위한 집행 비용 보고

	Classification :	<p style="text-align: center;">규정</p>	Revision No:	00
	Title :	<p>경영위원회 운영규정</p>		Page :

6. 그 외 ESG경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보고 및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연간 성과평가측정 계획 및 체계 수립 보고
8. 이익배분 계획 수립 및 집행(배당, 자사주매입, 인센티브 등) #별첨 1
9. 기타 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외 조직 개편, 신규 조직장 임명 등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주요 사항
11. 내부거래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
#별첨 2. 내부거래 및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시행세칙
12. 해외법인을 포함하여 종속회사(자회사), 공동회사, 관계회사, 투자회사 등의 주요 경영사항(등기, 사업·투자·경영 활동 등)에 대한 결정 및 승인
(각 회사에 대한 정의는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준용한다.)
 - (1) 종속회사(자회사)는 지배회사(모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율을 가지고 있거나, 지배회사(모회사)의 직접적인 지배력을 받는 회사를 의미한다.
 - (2) 공동회사는 두 회사가 동일한 50% 지분을 투자한 회사를 의미한다.
 - (3) 관계회사는 상대회사가 지분율을 20%이상부터 50% 미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를 의미한다.
 - (4) 투자회사는 종속회사(모회사), 공동회사, 관계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분율 20% 미만으로 단순 투자 목적의 회사를 의미한다.

제 7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 전원 참석 시에만 위원회 소집 및 개최에 대한 성원이 충족된다.
- ② 위원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결의방법은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위원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 전체의 출석과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가결된다.
 2. 대표이사 유고 또는 공석 발생 시, 결의 권한은 이사회 의장에게 위임하며, 이사회 의장과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의장)를 준용한다.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Page :

제 8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 보존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 원본은 위원회 주관부서에서, 사본은 당해 업무 소관부서에서 보관하되, 10년간 보존한다.

제 9 조 [자료요청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 등에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4장 회 의

제 10 조 [간사]

- ① 위원회는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록 작성을 포함하는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제 11 조 [통지의무]

-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각 이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 결의할 수 있다.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Page : 11/17

제 12 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3 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회의 1일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통지의 방법은 유선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5장 기 타

제 14 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Page : 12/17

별첨 1

1. 이익배분의 목적 및 규정

1-1 이익배분의 목적

명확한 이익배분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시스템 구축

1-2 이익배분 규정

회사의 경영성과(영업이익)에 대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단, 회사 경영환경 및 성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비율 조정 가능)


- ① 조직원(20%)
- ② 주주(20%)
- ③ 혁신(20%)
- ④ 투자/공유(20%)
- ⑤ 유보(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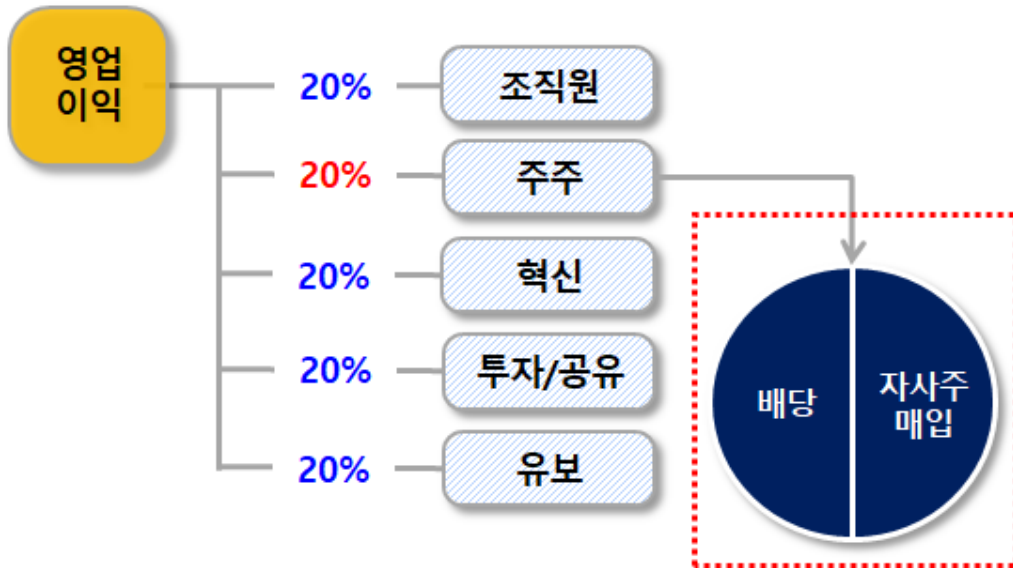
*: ① 조직원, ②주주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 구간별 배분 비율을 달리함


*: ② 주주의 경우 총 재원을 1) 배당, 2) 자사주매입으로 할당함.
(단, 주주에 대한 이익배분 방안은 변경될 수 있음)

*: ③ 회사는 매년 보유 자기주식 수 중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5개년 동안 임직원
주식 보상용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회사의 경영성과 및
상황을 고려하여 실 집행 금액은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경영성과 및 상황에 따라
실 집행 금액이 변경될 시 잔여 주식 보상 재원은 이후에 유동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Page : 13/17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Page :

별첨 2

내부거래 및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이하 “본 규칙”이라 한다)은 주성엔지니어링(주) (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내부거래 및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경영 활동상 의사결정 및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관련 법규정, 이사회 규정 및 경영위원회 규정 본문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① “내부거래”라 함은 회사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를 의미한다.
- ②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의 계열회사를 의미한다.
- ③ “이해관계자”라 함은 「상법」 542조의 9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사의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집행임원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④ “최대주주”라 함은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을 말한다.
- ⑤ “주요주주”라 함은 「상법」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 ⑥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본인과 「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 【내부거래에 대한 경영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Classification :	<p style="text-align: center;">규정</p>	Revision No:	00
	Title :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Page : 15/17

- ① 위원회는 회사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이하 "내부거래")에 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한다.
- ② 위원회는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③ 위원회는 내부거래의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회사는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2. 채무이행의 보증
3.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4.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5.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6.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7.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말한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
9. 기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거래행위

제 6 조 【일반원칙의 예외】

회사는 제5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의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Page : 16/17

범위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2.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

가. 법인인 주요주주

나.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해당 법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다.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법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제 7 조 【기타 거래의 제한 및 절차】

① 회사는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제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단일의 거래규모가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20이상인 거래

②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구성원 중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8 조 【제한의 예외】

제7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인 경우, 위원회는 연간 거래총액을 승인하고 그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Classification :	규정	Revision No: 00
	Title :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Page : 17/17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